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 관련 교육 강화 〉

■ 정을호·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58호)

2026. 7.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기후환경 관련 교육 강화	3
※ 참고자료	9
1. 학교의 범위 및 현황	9
2. 학교 환경교육 현황	10

I. 제안경위

2026년 2월 13일 정을호·정혜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기후환경 관련 교육 강화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제67조제5항의 나열식 조문을 각 호로 규정·구체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 ① ----- ----- ----- -----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 ----- ----- ----- -----.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 교육 강화 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 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 강화 3.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 ⑥·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7조¹⁾에서는 정부가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교육,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해 「교육기본법」에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²⁾하면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기후환경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면서 기후환경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전 국민이 기후위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녹색생활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개정안에서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

-
- ④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국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⑦ 공영방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기후위기 관련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6853호,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 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기후환경교육) -----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을 인용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후 환경교육에 관해 별도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또한, 현행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은 교육 관련 전문인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문인력을 “교육 전문인력”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舊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3차 법안소위(2026.3.)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67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정을호·정혜경의원안	통합의견(2026.3.)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홍보 및 기후 환경교육 지원) ① --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홍보 및 기후 환경교육 지원) ① --
① 정부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	-----
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	-----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	-----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과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 지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과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현행	정을호·정혜경의원안	통합의견(2026.3.)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u>원할 수 있는 시책을</u> ----- ----- ----- ----- ----- ----- ----- ----- -----.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u>교육과정 개발</u> ,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	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u>녹색기술 기초역량 강화 등의 교육과정 개발</u> ,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현행	정을호·정혜경의원안	통합의견(2026.3.)
<u>신설></u> ⑥·⑦ (생략)	<u>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 강화</u> <u>3.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u> ⑥·⑦ (현행과 같음)	<u>강화</u> <u>2.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 강화</u> <u>3. 기후환경교육,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교육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u> ⑥·⑦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536

참고 1

학교의 범위 및 현황

□ 학교의 범위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를 말하며 학교의 종류 등은 법률로 따로 정함(교육기본법 제9조)
- 다만, 환경교육법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법인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도 학교교육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환경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 및 학교 환경교육 >

-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 : △ 유치원(유아교육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고등교육법)
- ◇ 환경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 :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환경교육법 제10조의2에 의한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2023.년~)

□ 학교 현황(교육통계포털, 24년말 기준)

- 유치원~고교까지 학교는 전국 2만개소, 이 중 초~고교는 1.2만개소이고 의무교육은 초·중학교 9천개소에서 실시(2024.12월 말)

구분	계(개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개소)	20,480	8,294	6,183	3,272	2,380	351
학생(만명)	565	49.6	249.5	133	130	2.9
교원(만명)	51	5.5	19.7	11.5	13	1.1

참고 2

학교 환경교육 현황

① 각급 학교별 지도·감독기관

- 일반적으로 유치원~고교*는 교육청,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지도·감독
* 국립학교는 교육부에서 지도·감독
- 유치원~고교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지역에 적합하게 정할 수 있고 학교에서 운영

구분	관련 사무
유치원, 초등학교~고등학교 등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도·감독) 국립유치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학교),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과정) △유치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대학교 등(고등교육법)	(지도·감독)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교육과정)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4개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	(학위과정 등)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두며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환경교육에 대한 기후부의 역할 (환경교육법)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학교환경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 등을 지원

②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 (교과 연계) 국어, 사회, 도덕, 과학 등 교과 내 환경과 관련된 영역에서 환경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환경시설 방문 등 자율 활동, 환경동아리 활동, 환경관련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환경교육 실시

□ 교육청별 주요 환경교육 운영 현황

구분	환경교육 운영 현황(2023.3.1.~)
서울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교과연계,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 7시간 이상 편성 권장, 기후변화환경교육 주간 계기교육 및 기후행동 실천)
부산교육청	생태환경교육지원사업비 지원,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필수)(학교환경교육 실시계획 수립, 실천프로그램 계획 포함, 1교1생태환경 관련 동아리 운영), 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 실시(필수)
대구교육청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수업 실시 및 내실화(8차시), 1교 1특색 환경교육 과제 운영, 환경교육(ESD) 학생 동아리 조직운영,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기후변화 환경교육 교재 발간 등
인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생태전환교실 시스템 구축운영, 하천과 숲을 살리는 숲속학교 조성),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코스마트팜 체험교육, 기후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 운영 등), 생태시민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의무화 시수 운영
광주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기후환경생태교육 2시간 필수, 2시간 추가 권장, 환경교육주간 운영, 기후환경생태영역 자치학교 운영, 기후환경교육 교사연구회·교원 연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환경생태교육 운영,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 등
대전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강화(범교과 연계 연간 6시간 이상), 1교1특색 환경실천과제 운영, 환경학생 동아리 운영,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초록꿈마당 운영, 환경교육 탄소중립 중심학교 운영 등
울산교육청	환경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의무화(창의적체험활동 또는 교과연계 4시간 이상), 생태환경교육 실천 학생동아리 활동 교사환경수업 개발 동아리·생태환경연구학교 등 운영, 지역협력 학교환경교육 지원 강화 등
세종교육청	환경수업 운영 2시간 이상 권고, 학교별 교과와 창체활동 등 범교과 연계로 자율 운영, 학교환경교육담당자 지정, 탄소중립 시범학교·찾아가는 학교환경교육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 학생환경동아리 등 운영
경기교육청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지구지킴이 일일 프로젝트' 실시 (연간 2시간),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생태숲학교 운영, 환경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보전 프로젝트 운영 등
강원교육청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교육, 생명 다양성 교육 등을 학교 교육과정 필수 반영, 1교 1특색 생태환경교육 운영,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강원 생태환경실천학교 운영 등
충북교육청	학교별 환경교육 추진계획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교육' 시수를 학교별 연간 2시간 이상 필수 편성 운영(교과와 창체 활용), 학교기본운영경비(환경교육) 지원 등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참학력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연간 4회 이상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계획 수립 및 실시), 학교별 환경교육 추진계획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조직 및 운영 의무화 등
전북교육청	범교과주제로 관련 교과 통합(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환경교과목편성_자율) 등에서 환경교육 의무 실시, 모든 학교에 기후변화교육 경상운영비 지원 등
전남교육청	학교별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 계획 수립(필수), 범교과주제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의무), 교육과정 연계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학년별 연 1회 운영 필수), 탄소중립 선도 학교·실천집중주간 운영 등
경북교육청	범교과학습(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2시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실시, 환경교육주간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 지원을 통한 학교 맞춤형 생태전환교육 운영 등
경남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변경(중점교육활동 '생태전환교육' 편성 의무), 학생 환경동아리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환경프로젝트 수업 권장(학기당 1회), 학생 환경프로젝트 발표대회 운영 등
제주교육청	교육과정 내(교과 및 창체 연계) 생태환경교육 편성·운영(연간 2시간 이상 필수), 학교 연간 교육 계획에 환경교육주간 반영,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자료 공유 및 나눔,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등